개방이사추천위원회 운영 규정

2024년 08월 13일 제정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학교법인 복음신학원(이하 "법인" 이라 한다) 정관 제20조의 3 제1항, 대학평의원회 운영 규정 제1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방이사추천위원회(이하 "위원회" 라 한다)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능) 위원회는 법인 정관 제20조의3 제1항에서 정한 개방이사 및 개방감사를 추천한다.

제3조(설치 및 구성)

① 위원회는 대학평의원회에 둔다.

② 위원회는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대한예수교 복음교회 총회에서 추천한 자 : 3인
2. 대학평의원회에서 추천한 자 : 2인

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.

④ 위원장은 추천위원회를 대표하며,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.

제4조(위원의 임기)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추천되는 날로부터 개방이사 및 개방감사의 선임이 완료된 날까지로 한다.

제5조(회의)

① 법인으로부터 제2조에 따른 개방이사 및 개방감사의 추천 요청이 있을 시, 회의를 소집한다.

②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6조(개방이사 및 개방감사의 추천 절차)

① 법인으로부터 개방이사 또는 개방 감사 선임 대상자를 추천 요청을 받은 위원회는 30일 이내에 개방이사는 대상 인원의 2배수, 개방감사는 대상 인원을 추천하여야 한다.

② 위원회는 개방이사 및 개방감사 후보자 추천을 위해 필요한 경우 후보자의 출석 및 추가적인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

제7조(개방이사 및 개방감사의 자격)

① 개방이사 및 감사는 본교의 건학이념을 구현하는 그리스도의 정신(오순절 신앙)을 지니고 있는 자 이어야 한다.

②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개방임원이 될 수 없다.

1. 법인의 설립자
2. 법인 설립자와 민법 제777조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
3. 법인의 임원(개방이사 제외)이었던 사람
4. 법인의 학교의 장 이었던 사람

제8조(회의록)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하고 그 결과를 보관하여야 한다.

제9조(업무분장) 위원회의 사무는 대학평의원회에서 관장하며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서기를 둔다.

제10조(준용) 이 규정에서 정한 이외의 사항은 사립학교법, 사립학교법 시행령 및 법인 정관을 준용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